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00
----------	-------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한창민 · 김문수 · 정혜경
손 술 · 용혜인 · 신장식
강경숙 · 김종민 · 황운하
김 윤 · 김재원 · 윤종오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 제4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음.

법률의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그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4호와 같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음 각 목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국무총리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차관급 공무원
 - 다.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 라.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
 - 마.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 바. 그 밖에 정무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판관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생략)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②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u>다음 각 목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가. 국무총리</u> <u>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차관급 공무원</u> <u>다.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u> <u>라.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u> <u>마.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u> <u>바. 그 밖에 정무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